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2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3. 15) 상정
-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(2010. 3. 15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산지원과장 이 도 극)

가. 제안이유

- 「농어촌정비법」이 전부개정 (법률 제9758호, 2009. 6. 9. 공포·2009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로 변경함(안 제명).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규정이 제22조에서 제23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변경·정비함.
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- 특이사항 없음	- 특이사항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”를 “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1조·제32조에 따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(이하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이라 한다)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(이하 “목적 외 사용경비”라 한다)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·제3조 및 제4조 중 “농업기반시설”을 각각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554호
의결 년월일	2010. 3. 19 (제159회)

제출년월일 : 2010. 2. 2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농어촌정비법」이 전부개정 (법률 제9758호, 2009. 6. 9. 공포·2009. 12. 10. 시행)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로 변경함(안 제명).
- 나.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규정이 제22조에서 제23조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조).
- 다. 「농어촌정비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변경·정비함(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).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”를 “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정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1조·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(이하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이라 한다)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(이하 “목적 외 사용 경비”라 한다)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·제3조 및 제4조 중 “농업기반시설”을 각각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천시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</u></p>	<p><u>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농어촌정비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1조·제32조에 따라 <u>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(이하 "농업기반시설"이라 한다)</u>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(이하 "목적 외 사용경비"라 한다)의 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농어촌정비법</u>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1조·제32조에 따라 <u>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(이하 "농업생산기반시설"이라 한다)</u>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(이하 "목적 외 사용경비"라 한다)의 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<u>농업기반시설</u>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<u>농업생산기반시설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) <u>농업기반시설</u>의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 범위는 영 제32조에 따른다.</p>	<p>제3조(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) <u>농업생산기반시설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징수) ① (생략) ② 목적 외 사용경비는 <u>농업기반시설</u>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농업생산기반시설</u>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)</p> <p>①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,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)</p> <p>①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,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